

의안
번호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9. 2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5호

다. 제출일자 : 2022. 09. 20.

라. 회부일자 : 2022. 09. 23.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남녀 성별을 고려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의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
(안 제4조)
-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의 명확한 조정 사유 정비(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07. 28. ~ 2022. 08. 17.
- 의 견 : 의견 없음.

라.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구분	권고안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개선안 포함)
인권 영향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 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 구성“에 → ‘(권고안) 청년할당제를 적 용하여 청년을 10%~20% 위원에 넣을 수 있도록 조항 에 명기하기 바람.	미반영	현재 보육정책위원의 구성은 보 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 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년(19세 이 상 34세 이하)의 위원 자격 요 건 충족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 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현 조례 개정안에서는 원안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등

-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관련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¹⁾ 위탁기간의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

- **안 제4조(위원회 구성)제1항** 개정은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2)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한 것임.
- **안 제14조(위탁기간)제1항의 단서** 개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와 시설의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1)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 88개소

무상사용임대차 계약 체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 51개소(22.8월 기준)

2)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6.29., 2021.3.2., 2021.12.7.]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6.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별표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 2.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보육사업지침(인건비 지원 원칙)」

『사회복지시설 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